

『추풍령 주거플랫폼 생활soc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 설계용역』 질의답변

NO		page	질 의 내 용	질 의 답 변
1	1-1	2	옥탑 옥외체육공간 및 옥외스탠드 >세부적인 지침 필요	외부시설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안할 것.
	1-2	3~4	부설주차장 건립사업지와 연결하여 설치 >건립사업지 어느부분을 말하는건지 확인요망	건립 사업지의 의미는 계획건물의 위치로 부설주차장은 계획건물과 인접하여 설치할 것.
	1-3	3~4	사업부지내 주차장은 시설 및 기타방문자의 공동사용 감안하여 계획 >복측 임대단지와 공동사용 해야하는지 확인 요망	부설주차장은 본시설 전용으로 복측 임대단지와 공동사용하지 않음. 복측 임대단지는 별도의 주차장을 계획할 예정.
	1-4	3~4	주민공동텃밭 및 유보지 영역 표기된 도면 필요	유보지는 추후 증축을 위한 공간으로 단지내 주민공동텃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것.
	1-5	3~4	주거플랫폼 임대주택단지 향후 계획에 따라 계획도로 등 변경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요망	임대주택단지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아 변경 될수 가능성이 있으나, 공모단계에서는 지침의 도로 기준으로 계획할 것.
	1-6	19	복측 임대단지 고려할 것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지 자료요청	임대주택단지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아 자료 제공은 불가하며 복측 임대단지에서의 사용을 고려하여 제안할 것.
2	2-1	1	용도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및 문화집회시설의 확인 >1종근린생활시설의 공공도서관이 아닌지 확인요망, 문화집회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를 말하는 것인지 확인요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공공도서관"과 "마을회관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계획 할 것 .
3	3-1	4	부설주차장, 주민공동텃밭 등 외부시설 계획 관련 설명이 있는데 외부에 계획되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관한 지침내용이 별도로 있는지요	외부시설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안할 것.
	3-2	10	나.제출도서의 작성 1)제출서류 나) 설계설명서 (발표자료-A3)로 되어있습니다. 본 공모전의 심사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발표자료' 오기재임. 심사는 별도 발표없이 진행됨.
	3-3	19	1)배치계획 - 최대한 열린공간을 확보하고 단지조경과 연계된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단지조경 도면이 제공되는지요?	단지내 도로 복측은 조경부분이며, 외부시설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안할 것.
4	4-1	1	지침서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로 제안되었는데,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공공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건축물의 용도 확인요청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공공도서관"과 "마을회관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계획 할 것.
	4-2	2	스페이스 프로그램 세부면적 제공여부	별도 세부면적 없음. 기능을 고려하여 제안 가능.

4	4-3	4	주민공동텃밭 공간은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옥외 농업생산공간이며, 향후 추가 사업을 위한 유보지로 설계 계획에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함 >여기서 주민공동텃밭은 계획대지내 금번 건립사업지 외의 부지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유보지는 추후 증축을 위한 공간으로 단지내 주민공동텃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것.
	4-4	4,19	'부설주차장은 건립사업지와 연결하여 설치하며, 신안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4p) '진입도로는 마스터플랜 계획과 같이 유지하고' (19p) >부설주차장 출입은 마스터플랜상의 진입도로를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입도로와 상관없이 신안로에서 직접 출입 가능하면 되는지? (신안로에 마스터플랜상의 진입로외에 별도 차량 출입구를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부설주차장은 단지내 도로와 신안로에서 직접 진입 두 방식 모두 가능함.
5	5-1	1	예정공사비의 m2당 단가가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도서관기준)보다 많이 낮습니다. 옥외공간(루프탑, 스탠드, 체육공원,조경 등) 고려시 공사비 단가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비 조정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공사비 책정 자료 제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략내역서 산정시 참고 필요)	전문적인 도서관이 아닌 마을회관 형식의 약식 도서관이므로 예정공사비 기준으로 설계할 것.
	5-2	10	조감도 및 투시도의 컷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제한없음.
	5-3	16	저작권은 보상금 지급과 관계없이 제출자에게 남고, 발주청은 비영리 목적의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나.-1)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법규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저작권은 건축가에게 귀속 됨.
	5-4	18	6.-가.-2)번 항목의 단지 마스터플랜 자료 제공 가능한가요?	임대주택단지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아 변경 될수 가능성이 있으나, 공모단계에서는 지침의 도로 기준으로 계획할것.
	5-5	22	6.-라-3)의 각 공간별 운영시간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별도의 운영계획 미확정. 설계의도에 맞춰 제안 가능.
6	6-1	2	공간에 대한 면적 및 산출 근거가 있는지?	별도 산출자료 없음. 지역주민 편의시설임을 고려하여 계획.
	6-2	3	사업부지내 주차장은 시설 및 기타 방문자의 공동사용을 감안하여 계획해야함 / 주차장 규모에 대한 제시가 없어 기타 방문자에 대한 인원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인근 주민의 차량이동을 고려하여 법정부차대수 이상의 주차대수 필요. 7대 이상으로 계획 할 것.
	6-3	4	생활SOC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 구역 내 신안로는 어디를 말하는지? / 부설주차장은 건립사업지와 연결하라는데 건립사업지는 임대형주택단지를 말하는지 생활 SOC 사업부지를 말하는지?	page 4 3) 신안로는 추풍령 주거플랫폼 예상 마스터플랜상 서측 8M 도로임
	6-4	13	추풍령 주거플랫폼 단지 조성을 고려한 외관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임대주택단지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아 변경 될수 가능성이 있으나, 공모단계에서는 지침의 도로 기준으로 계획할 것.

7	7-1	4	예상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연결도로와 북측대지경계선의 사이공간에 건축시설물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단지내 도로 북측은 조경부분이며, 부설주차장 설치 불가.
	7-2	4	대지내부에 차로를 신설할시에 예상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연결도로의 주위로 약3m폭의 선형(보도+가로수로예측)을 변형하여 대지내부의 차로와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	신안로와 접한 3M 선형은 보도이나 계획따라 변형 가능.
	7-3	4	예상 마스터플랜하부에 부설주차장은 신안로에서 직접진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부지전면(서측)에 위치시켜 신안로와 반드시 연결 시키라는 의미인지, 제시된 연결도로를 통해 차량이 들어온다면 다른계획도 가능한지 정확한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ex) 제시된 연결도로를 통해 차량이 들어와서 부지후면(동측)에 주차장이 위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부설주차장은 단지내 도로와 신안로에서 직접 진입 두 방식 모두 가능함.
	7-4	20	나항목의 시설별 세부지침에서 ④번의 다목적 문화커뮤니티룸은 “외부에서 직접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를 고려하여 사용상에 동선 분리가가능” 하도록 명시되어있는데, 포괄적이라 다소 의미가 모호합니다. 이에따른 다목적문화커뮤니티룸 계획시에 A. 도서관 시설과 외부로 분리하여 별도운영 가능하도록 배치하라는 것인지, B. 출입구만 따로 계획하여 주출입 동선을 분리하되, 도서관 내부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하는 것인지 C. 아니면 A,B가 모두가능한지 해석에 따라 A,B,C 상황에 직면하는데, 명확한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과 다목적 문화커뮤니티룸은 출입구만 따로 계획하여 주출입 동선을 분리하되, 도서관 내부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7-5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르면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공공도서관”과 “마을회관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데, 지침의 사업개요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명시되어있어 법령내용과 상이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공공도서관”과 “마을회관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계획 할 것 .
	7-6	-	금번설계공모 참여업체수 확인 가능한지 여부	참여업체수는 공개하지 않음.
8	8-1		설명서 도면(배치도, 평면도 등)은 정해진 스케일이 있는지?	스케일 지정 없음. 같은 형식의 도면들은 (각층 평면도) 동일한 스케일 권장.
	8-2		주차대수 산정시 용도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공공도서관”과 “마을회관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계획할 것.
	8-3		외부공간 계획시 필요 시설 및 면적이 있는지? (주민공동텃밭 등)	외부시설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안할 것.
	8-4		차량출입시 신안로(8M도로) 및 주거플랫폼 연결 도로(6M)에서 둘다 가능한지?	부설주차장은 단지내 도로와 신안로에서 직접 진입 두 방식 모두 가능함.
	8-5		기계/전기실은 별도로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모단계에서 계획하지 않음. 실시설계시 계획.
	8-6		계획대지의 주거플랫폼 임대주택단지 사업대상지는 표현이 가능한지? (가배치 및 도로, 조경 등 표현)	임대주택단지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아 변경 될수 가능성이 있으나, 공모단계에서는 지침의 도로 기준으로 계획할 것.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표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9	9-1	4	신안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해야하며,...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을 보면 신안로가 아닌, 주거플랫폼 예정도로를 활용하여 진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산업단지의 계획예정인 도로선에서 차량진출입구를 계획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부설주차장은 단지내 도로와 신안로에서 직접 진입 두 방식 모두 가능함.
10	10-1	4	주택단지 대지 레벨은 +233, 계획대지 레벨은 +23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대지를 가로지르는 연결도로의 레벨은 어디에서부터 +231, +233으로 보는지요?	계획대지레벨을 전체 평지로 보고 주거플랫폼 임대주택단지에서 단차를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
11	11-1	3	사업부지 서측의 신안로와 남측의 추풍령면산지 유통센터 진입도로가 교차하는 남서측의 모퉁이에 삼각형 모양의 대지가 있습니다. 지번은 추풍령리 930번지(도로), 421-5번지(답), 421-4(도로) 등으로 확인되어, 향후 도로 확장시 활용되는지 질의합니다. 이 삼각형 모양의 대지가 향후 도로로 활용된다면, 이 대지를 통해 사업대지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건축계획이나 있거나 민간 소유일 경우 사업대지로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의 대지를 통해 사업대지로 진입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삼각형 모양의 대지를 통해 사업대지로 진입은 불가함.
	11-2	19	추풍령 주거플랫폼(복측 임대주택단지)의 마스터플랜 관련 최신 자료를 요청합니다.	임대주택단지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아 변경 될수 가능성이 있으나, 공모단계에서는 지침의 도로 기준으로 계획할 것.
12	12-1	1	지침상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및 문화집회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 문화 및 집회시설도 확인바람.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공공도서관"과 "마을회관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계획 할 것.

** 12개사 / 총 40개 질의